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30일, 위성곤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위성곤의원)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도를 허용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90만 명에 달함. 이에 따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타 지역으로 출도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항공사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가중 및 공항 혼잡, 항공사의 인력 부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과중한 심사 업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유일하게 국내선 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에만 운영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제주 출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